라이선스 신탁회사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라이선스 요건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 2005)은 싱가포르에서 신탁회사의 라이선스와 규제를 규율합니다. 회사가 명시신탁을 설정하거나, 명시신탁의 수탁자로 활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탁자로 활동하도록 주선하거나, 신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 제D편 제V장은 이 법이 신탁회사를 회사등기소에 대한 임의 등록에서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의무적 라이선스 체제로 옮긴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문의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 그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 자산을 소유하는 수탁자를 같은 규제기관이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조건

진입 요건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신청인은 최소 25만 싱가포르달러의 납입자본금 또는 적격 자산을 갖추어야 하고, 이후에도 요구되는 순자산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험에 상응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소 2명의 거주 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그중 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명은 최소 5년, 나머지는 최소 3년의 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MAS는 신청인, 그 주주, 거주 관리자 및 이사의 적격성과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MAS는 간단하고 완비된 신청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싱가포르달러,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는 4,000싱가포르달러입니다.[2]

라이선스를 받은 신탁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MAS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에 적합한 정책, 절차 및 통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직, 공정, 청렴 및 전문성(honesty, fairness, integrity and professionalism)"을 갖추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몇몇 집단은 라이선스가 면제됩니다. 이미 MAS의 라이선스를 받은 은행과 머천트뱅크는 1개월 이내에 MAS에 통지한 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및 프라이빗 신탁회사도 이 법 Section 15와 Trust Companies (Exemption) Regulations 제4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3] 은행에 대한 면제는 여러 프라이빗 뱅크가 은행 자체를 통해 신탁업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다른 은행들은 별도로 라이선스를 받은 자회사를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수탁자의 책임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업계

2026년 11월 MAS 등록부에는 라이선스 신탁회사에 대한 라이선스 67건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4] 이 숫자에는 국제 은행의 신탁 부문, 전문가 그룹이 소유한 독립 신탁회사, 그리고 싱가포르 변호사와 회계사가 설립한 여러 회사가 포함됩니다. 2005년 10월 MAS는 최소 16개의 수탁 사업체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5] 이러한 성장은 아시아 전역에서 가문 자산이 유입되었고, 2008년 이후 유럽과 미국 세무당국의 압력을 받던 금융중심지로부터 신탁업이 이동해 왔음을 반영합니다.

라이선스 신탁회사는 명의를 보유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탁자와 수익자의 온보딩, 신탁 기록 유지, 회계 작성, 세무 보고 처리, 그리고 하나의 구조에 관여하는 은행, 자산운용사 및 변호사 간의 조정을 맡습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니다. 많은 국제적 가문에게 라이선스 신탁회사는 싱가포르와의 관계에서 무게중심입니다.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이 바뀌어도 수탁자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수익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문에 대한 수탁자의 이해는 구조가 의존하는 자산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평판

제D편 제V장에서 보았듯이 신탁업의 평판 위험은 일찍부터 인식되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실질적 소유자가 설계상 대중에게 감추어진 구조의 문지기입니다. 따라서 그 고객확인은 MAS가 신탁회사에 발송하는 고시에 따라 위탁자, 신탁된 자산의 출처, 수익자, 그리고 신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포괄하여야 합니다.[6]

이 편의 제VI장에서 검토하는 청렴성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의무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회사형 기구와 신탁은 1MDB 사건과 2023년 자금세탁 사건 모두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탁회사는 은행과 같은 엄격함으로 위탁자의 재산 형성 경위를 검증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 요구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제H편 제III장은 이러한 의무가 작동하는 자금세탁방지의 일반적 체계를 설명합니다.

주

1. MAS, “Trust Companies Act”, 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법은 “governs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trust companies in Singapore”; Trust Companies Regulations 최종 개정 2018년 8월 14일.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하여는 MAS, “Licensed Trust Companies”, 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2. MAS, “Trust Business Licence”, 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최소 납입자본금 또는 적격 자산 25만 싱가포르달러; Trust Companies Regulations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최소 2명의 거주 관리자, 그중 최소 1명은 5년의 관련 실무경력, 나머지는 최소 3년; 처리기간 “not more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than 6 months"; 신청 수수료 1,000싱가포르달러; 연간 수수료 4,000싱가포르달러. ↩

3. MAS, "Licensed Trust Companies", 앞의 주: 영업행위 및 AML/CFT 조건; 은행과 머천트뱅크는 신탁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Form 8로 MAS에 통지; 프라이빗 신탁회사, 변호사 및 회계사는 면제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TCA Section 15 및 Trust Companies (Exemption) Regulations 제4조. ↩
4. MAS,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y, 부문 Capital Markets, 라이선스 유형 Licensed Trust Company, eservices.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7일: "67 result(s)". 한 기관이 여러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건수가 기관 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주석이 붙어 있음. ↩
5. MAS, 2005년 10월 26일 STEP Trusts in Asia Pacific Conference 연설, 제D편 제V장에서 인용: 최소 16개의 수탁 사업체가 2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약 800억 싱가포르달러의 자산에 대해 수탁자로 활동. ↩
6. MAS, Notice TCA-N03,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Trust Companies", m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현행 버전 최종 개정 2025년 6월 30일; 2009년 12월 2일자 이전 버전(최종 개정 2022년 3월 1일)은 2025년 7월 1일자로 폐지됨.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